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 819호 2011. 3. 1(화)

◀ 입법예고 ▶

- 포항시 해병부대 등 장병 지원 조례 입법예고(제2011-168호) 2

◀ 공 고 ▶

-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제2011-170호) 7
- 제17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시의회공고 제2호) 10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11

회 람									
--------	--	--	--	--	--	--	--	--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1-168호

포항시 해병부대 등 장병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2. 28.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해병부대 등 장병 지원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시 해병대 장병이 희생되고, 그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졌지만, 한편으로 해병대 장병들의 사기는 일부 저하됨에 따라,
- 대한민국 해병대의 최고 주둔지 포항지역에서 해병부대 장병들의 예우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해병대 장병 및 그 밖의 군부대의 사기양양 및 시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정안 전문 별첨)

- 가.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으로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한 포항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포항시민과의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 사업, 민·군·관 교류증대 사업, 협력 및 지원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사업을 명시 (안 제4조)
- 다. 지원사업 및 사업실적 평가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제4조에 따른 민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시정발전 유공 장병 및 제대 장병 등 포상 및 명예시민증 수여 규정 등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관련법령

- 「군인인사법」 제2조
- 「국군조직법」 16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3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6조, 제23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6조, 제16조
-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은 2011. 3.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1001번지), 전화 270-2071, 2073, FAX 270-2070, E-mail : hylimph@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포항시 해병부대 등 장병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포항시 해병부대 등 장병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해병부대와 그 밖의 군부대에 복무중이거나 제대한 군 장병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양양하는 한편, 군 장병과 포항시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포항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병부대 등”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해병부대와 그 밖의 군부대를 말함
2. “장병”이란 해병부대 등에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포항지역 해병부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도 포함됨
3. “제대장병”이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해병부대 등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함

제3조(시의 책무) 시는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이 지역 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장병 및 제대군인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병 및 제대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양양하며 포항시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포항시민과의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포항시민, 장병 및 제대군인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구성·운영
 - 나. 외출·외박 장병의 숙박, 여가활동 등 수용여건의 개선
 - 다. 해병부대 등에 전입하는 장병에 대한 시정안내 사업
2. 민·군·관 교류증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장병 초청 시정설명회 개최
 - 나. 모범 장병 및 제대장병(제대 예정 장병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 투어(TOUR) 프로그램 운영
 - 다. 시민단체 또는 지역단체와 해병부대 등 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3. 해병부대 등 주변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4. 해병부대 등의 창설기념 행사, 지휘관 이·취임 행사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경과
4. 해병부대 등 및 관련 단체 등의 건의사항 등의 처리 경과
5. 그 밖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장병(장병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인 가족을 포함한다)이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병부대 등의 주요 지휘관, 장병, 제대장병 중 포항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수립하여야 한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11 - 170 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폐차코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이하의 범칙금) 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1. 02. 23.

포 항 시 장 박




- 1. 공 고 기 간 : 2011. 02. 24. ~ 2011. 03. 09. (14일간)
- 2. 폐 차 장 소 : 대원종합폐차장
- 3. 폐차 예정일 : 2011. 03. 10. 이후
-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 5. 공시송달은 공고로 같음합니다.
- 6. 강제처리대상차량 : 불임 무단방치 이륜차 폐차공고 내역 참조

□ 무단방치 이륜차 폐차공고 내역

연번	방치차량내역			사 진
1 (11-14)	차량	등록번호	미 상 (KMYOG750GYC098855)	
		차 명		
	소유자	성 명	미 상	
		주민번호		
		주 소		
	방치장소		북구 대흥동 포항역 일원 (역전파출소에서 수거)	
보관장소		대원종합폐차장 (☎ 054-248-8282)		
2 (11-15)	차량	등록번호	미 상 (IP39QMB08EE0338)	
		차 명	대림 시티	
	소유자	성 명	미 상	
		주민번호		
		주 소		
	방치장소		북구 대흥동 포항역 일원 (역전파출소에서 수거)	
보관장소		대원종합폐차장 (☎ 054-248-8282)		
3 (11-16)	차량	등록번호	미 상	
		차 명		
	소유자	성 명	미 상	
		주민번호		
		주 소		
	방치장소		북구 대흥동 포항역 일원 (역전파출소에서 수거)	
보관장소		대원종합폐차장 (☎ 054-248-8282)		

□ 무단방치 이륜차 폐차공고 내역

연번	방치 차량 내역			사 진	
4 (11-21)	차량	등록번호	미 상 (KMYSE7ADS6C008261)		
		차 명	대림 A-FOUR		
	소유자	성 명	미 상		
		주민번호			
		주 소			
		방치장소	북구 동빈1가 84-64 세진싱크퍼니처 주차장		
		보관장소	대원종합폐차장 (☎ 054-248-8282)		

포항시의회공고 제 2 호

제17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11년 3월 7일(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2011년 2월 28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상 구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1년 2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 2. 25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시행일		2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강	공단	양역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약아 (수자원공사)	
			안개염수		임해염수	형상강 복류수 안개염수		진전지	늘대지수	곡강천 복류수	신광기계양부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분원성대장균(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유해영양물질	4. 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불소(F)	1.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 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0.9	0.2	1.0	0.7	0.7	0.9	0.9	0.9	0.9	0.9	
	13.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보론(B)	1.0mg/l이하	0.03	0.02	0.03	0.03	0.02	불검출	0.02	0.03	0.03	0.03	
	건강상유해영양물질	15. 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디아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론(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1,4-다이옥산(1,4-Dioxane)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32. 유리잔류염소(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58	0.82	0.71	0.54	0.42	0.67	0.19	0.68	0.89		
	33.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52	0.040	0.053	0.050	0.054	0.025	0.039	0.044	0.034		
	34.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37	0.032	0.044	0.040	0.045	0.016	0.026	0.034	0.029		
	35. 브로모디클로로메탄(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3	0.008	0.009	0.010	0.009	0.009	0.011	0.009	0.005		
	36. 디브로모클로로메탄(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2	0.001	불검출		

구 번	검 사 항 목	경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악 성	학 야 (수자원공사)
			안계염수		임하염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염수		진전지수	눌타지수	곡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37.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92	92	93	87	72	52	74	100	83	
38.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이하	2.7	2.8	3.8	3.2	3.4	0.5	2.8	2.4	6.5	
39.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1.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2.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불검출	
43.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수소이온농도(pH)	5.8-8.5	6.7	7.0	7.1	6.7	6.9	6.6	6.7	6.8	7.5	
45.아연(Zn)	3mg/ℓ이하	0.005	불검출	불검출	0.002	불검출	0.002	0.002	불검출	0.004	
46.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18	12	13	11	11	21	12	19	11	
47.총발산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143	75	79	84	93	55	111	111	247	
48.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망간(Mn)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2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0.탁도(Turbidity)	0.5NTU이하	0.06	0.10	0.10	0.05	0.06	0.06	0.09	0.07	0.10	
51.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22	12	28	14	14	24	16	22	16	
52.알루미늄(Al)	0.2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3	불검출	0.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3	
판 정		경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경 수 장 급수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악 성	
		용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잔류염소	4.0mg/ℓ이하	0.47	0.81	0.77	0.50	0.45	0.67	0.16	0.67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12	
7.아연	3mg/ℓ이하	불검출	0.004	0.070	불검출	0.011	0.002	0.002	0.281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19	12	13	19	11	21	12	불검출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9	
판 정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 수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학야정수장 230-4791
-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